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운전·대야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1. 03.



목 차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
1.3 사업개요	1
1.4 사업 추진경위 및 계획	2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	5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5
2.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선정	9
2.3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10
제3장 의견수렴계획	11
3.1 평가서 초안 공고	11
3.2 평가서 초안 공람	11
3.3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11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12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12
4.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12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관된 개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지방 하천인 운전천에 대하여 종합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개발, 치수 경제 및 수질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사 분석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수자원 종합개발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 또한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계 하천현황과 수리현황의 보존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 대상화하고 전산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일관된 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항 관련 [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하천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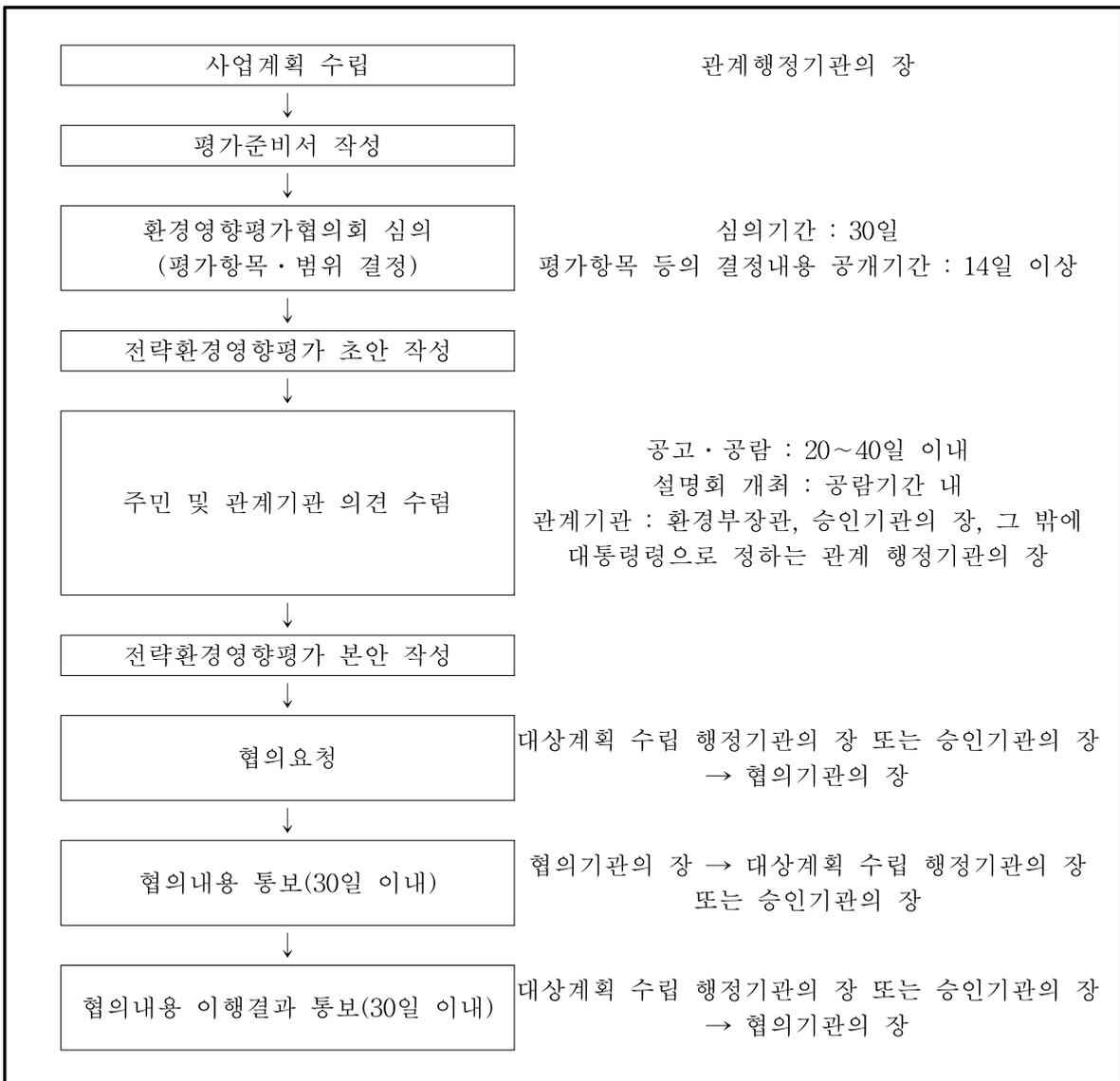
1.3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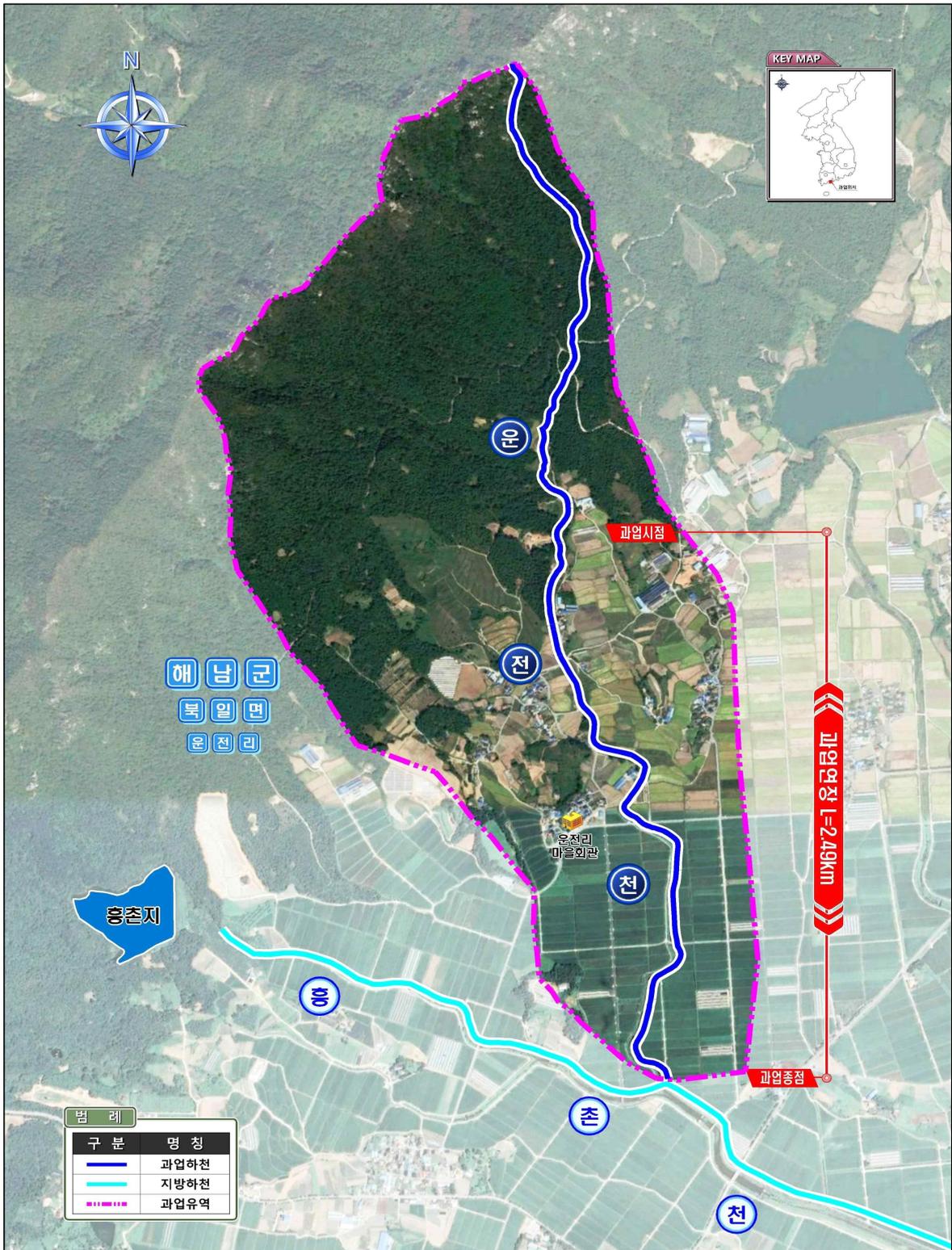
- 사업명 : 운전·대야천 하천기본계획
- 사업의 종류 : 하천사업
- 연 장 : 운전천 : L = 2.49km, 대야천 : L = 2.20km
운전천 : 전남 해남군 북일면 운전리 산 90-1~홍촌천 합류점
- 위 치 : 대야천 :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산 132-1번지선~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야해안
-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 승인기관 : 전라남도

1.4 사업 추진경위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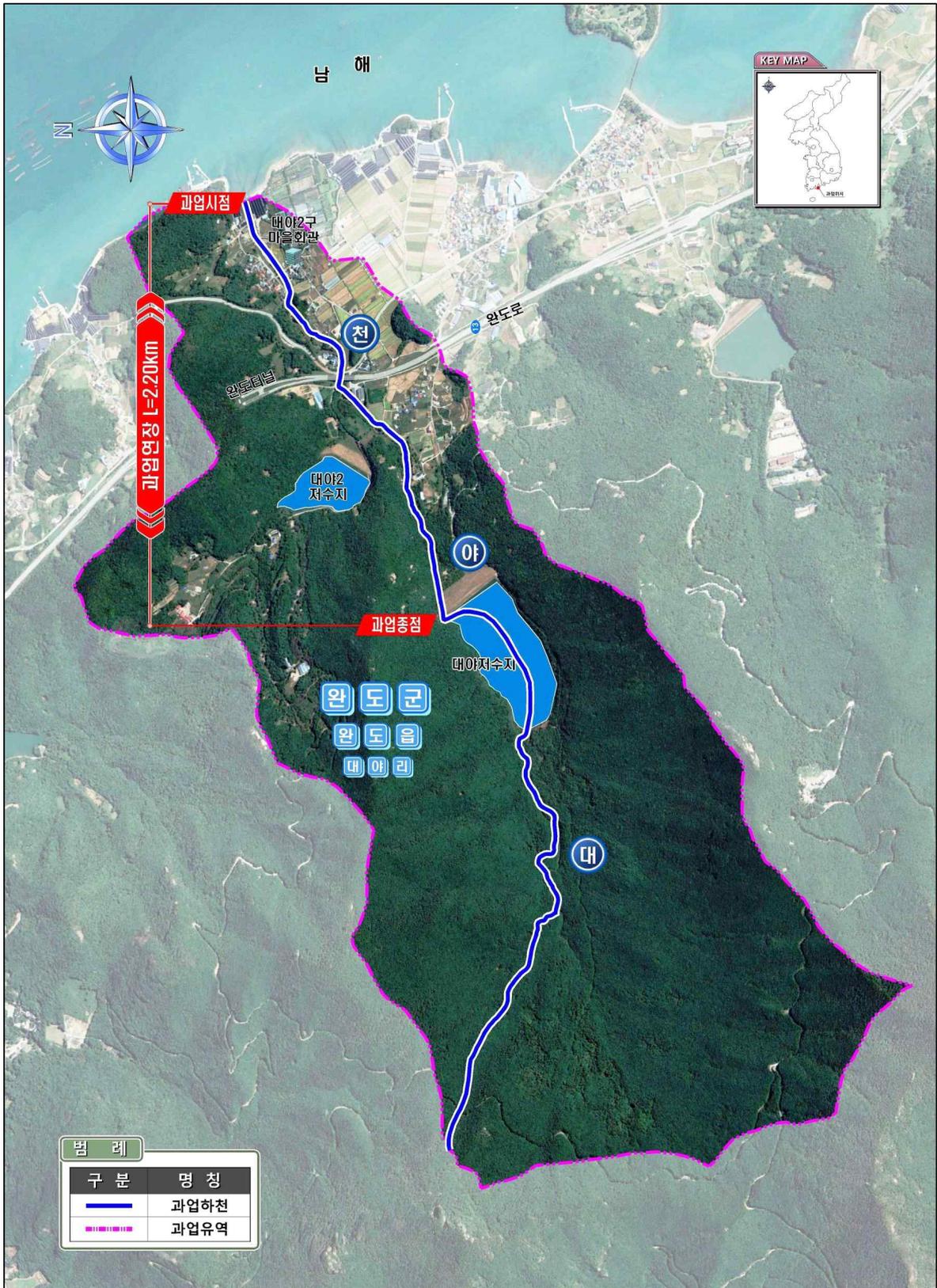
- 2021. 0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2021. 03.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 2021. 0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21. 05. : 주민 등의 의견수렴(공고·공람 및 설명회 등)
- 2021. 07.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2021.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표 1.4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절차





<그림 1 - 1> 계획하천 위치도(운전천)



<그림 1 - 2> 계획하천 위치도(대야천)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의 각 분야별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공사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도출하되 정량적인 방법으로 예측하며, 이에 따른 영향을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강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를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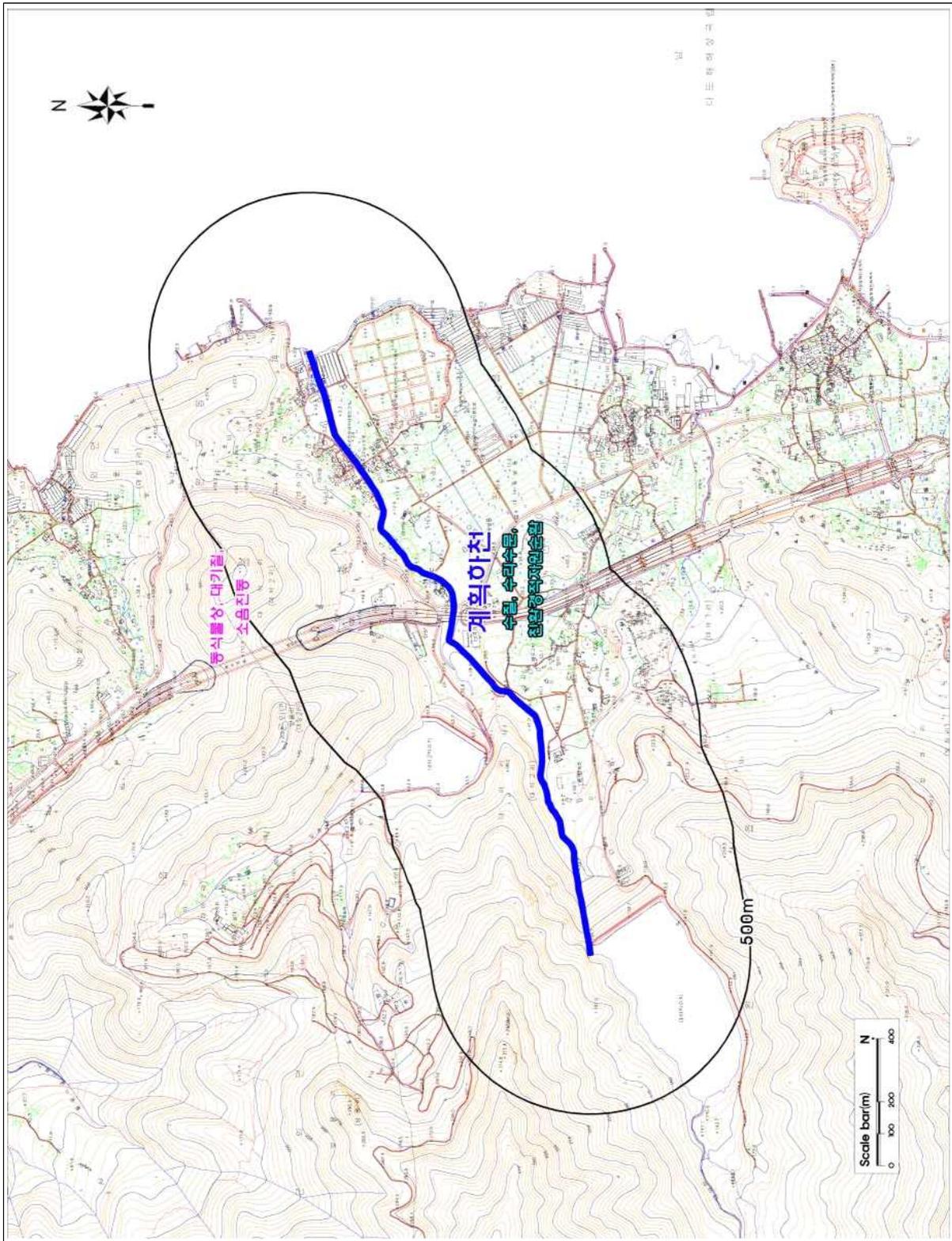
<표 2.1 - 1> 주요 항목별 검토대상범위

검토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대상 지역	설정사유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계획하천 중심선으로부터 500m이내	· 계획시행시 식생변화 및 육상·육수동물 서식환경 변화 예상지역
		자연환경자산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지형변화 예상지역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대상지가 조망되는 지점	· 계획시행시 하천정비로 인한 경관변화 예상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질	·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 계획시행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수리·수문	· 계획하천	· 계획시행시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 예상지역

검토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대상 지역	설정사유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장흥군 및 보성군	· 대기질 및 수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계획하천 경계로부터 500m이내	· 토공사 및 연료사용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영향 예상지역
		해양환경	· 계획하천 하류 해양지역	· 계획시행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상지역
		토양	· 계획하천	· 계획시행시 하천저질에 미치는 영향 예상지역
		소음·진동	· 계획하천 경계로부터 500m이내	· 공사장비 가동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예상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예상지역
	자원·에너지순 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의한 영향예상지역
사회· 경제환 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계획하천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지역



<그림 2.1 - 1> 대상지역 설정도(운전천)



<그림 2.1 - 2> 대상지역 설정도(대야천)

2.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선정

- 본 계획의 종류 및 성격, 입지여건, 환경특성 등을 토대로 검토된 환경영향요소 추출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함.
- 「환경영향평가서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중 본 개발기본계획의 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다음 표와 같이 선정함.

<표 2.2 - 1> 평가항목의 선정

세부평가항목		선정사유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여부검토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의 설정·분석을 통한 계획의 적정성 검토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사업시행에 따른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변화 · 하천 조성에 따른 수변 식생변화
	자연환경자산	· 자연자산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여부 분석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축제, 보축, 호안정비 등 계획수립시 지형변화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 변화
(4) 수환경의 보전	수질	· 공사시 토공사로 인한 하류수계의 영향 발생
	수리·수문	· 기존 시설물 현황 및 능력검토 · 계획홍수위, 계획홍수량 및 계획하폭 등 검토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상	· 인근 기상현황
	대기질	· 공사시 토공작업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검토
	해양환경	· 공사시 토공사로 인한 하류해양의 영향 검토
	토양	· 공사시 토공작업으로 인한 토양 영향검토
	소음·진동	· 공사시 장비운영 및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등으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검토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공사시 오수 및 폐기물 발생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인부 및 장비투입에 따른 폐기물 발생 · 축제, 시설물개량 등에 따른 폐기물 발생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1) 환경친화적토지이용	토지이용	· 토지이용의 변화발생

주) 운전전은 수계 하류로 직접적인 해양유입이 없어 해양환경 항목에서 제외함.

2.3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평가 항목별 검토내용,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2.3 - 1> 항목별 검토내용 및 방법(안)

항목	구분	검토내용	평가방법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현지 및 문헌조사를 통한 육상 및 육수 동·식물 현황 · 생태자연도 및 기존 조사자료를 통한 변화여부분석 ·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검토
		자연환경자산	· 현지 및 문헌조사를 통한 자연환경자산 현황 · 자연환경자산 및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 등 영향여부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중요 능선 및 생태축의 훼손 여부 검토 · 계획하천 일대 산경도 및 지형도 분석 · 도면을 이용한 토지이용계획 지형분석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지형변화로 인한 경관변화 · 경환시물레이션을 통한 경관 변화 분석 및 저감대책 검토
	수환경의 보전	수질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현황 분석 · 공사시 토사유출량, 오수발생량 · 수질 상시측정망 이용 · 토사 및 우수증가에 따른 저감방안 제시
		수리수문	· 홍수량에 따른 홍수위변화 · 기존시설물 능력검토를 통한 재설치계획 수립 · 계획시행에 따른 수리·수문 (홍수량, 홍수위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생활 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초의 부합성	기상	· 대기질 영향검토시 기초자료이용 · 계획대상지 인근 기상대 최신 기상연보자료 활용
		대기질	· 주변 지역 대기질 현황 파악 · 개발로 인한 대기질 영향검토 · 대기질 측정망 활용 · 비산먼지 억제대책 강구
		해양환경	· 사업계획에 따른 하류해양영향검토 · 토사유출에 의한 해역영향분석
		토양	· 주변 지역 토양 현황 파악 · 발생하는 토양오염 검토
		소음·진동	· 인근 정온시설의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점음원의 거리감쇠 이론을 적용한 소음발생정도 분석 및 저감대책 검토
	자원에너지 순화의 효율성	친환경적자원순환	· 생활폐기물 발생 예측 및 처리방안 ·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 예측 및 처리방안 · 최신통계연보를 활용 · 생활폐기물 발생량산정 ·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산정
사회·경제 환경	환경친화적토지이용	· 사업계획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 토지이용변화검토	

제 3장 의견수렴계획

3.1 평가서 초안 공고

- 전라남도청의 홈페이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할 계획임.
- 또한,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에 공람기간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3.2 평가서 초안 공람

- 계획하천이 위치한 전라남도청의 홈페이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해남군 및 완도군과 협의하여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공람장소에는 평가서 초안과 함께 소정양식의 ‘평가서초안 열람부’와 ‘주민의견 제출서’를 비치할 것임.

3.3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중 1회 실시토록 하며,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계획하천이 입지한 해남군 및 완도군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할 것임.
- 설명회 개최 공고는 평가서초안 공람 공고시 포함하여 공고할 것임.
- 한편, 주민설명회 개최 후 공청회 개최여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제 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4.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및 운영 주체
 - 계획수립기관 : 전라남도
 - 승인기관 : 전라남도
- 협의회 개최 기간
 - 2021.01.13.~2021.01.28.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심의(서면)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운전천 협의회 구성(총 8명) : 위원장 1명, 위원 7명
 - 대야천 협의회 구성(총 9명) : 위원장 1명, 위원 8명

구 분	직 위 급	위 원 명	소 속	
1	위원장	과 장	정 O 규	운 천
2	위 원	주 무 관	이 O 진	
3	위 원	연구위원	김 O 미	
4	위 원	교 수	김 O 근	
5	위 원	주 무 관	정 O 원	
6	위 원	주 무 관	오 O 준	
7	위 원	수자원기술사	김 O 구 (주)기립	
8	위 원	운전마을 노인회장	강 O 완	

구 분	직 위 급	위 원 명	소 속	
1	위원장	과 장	정 O 규	대 야 천
2	위 원	주 무 관	이 O 진	
3	위 원	연구위원	김 O 미	
4	위 원	교 수	김 O 근	
5	위 원	교 수	김 O 희	
6	위 원	주 무 관	정 O 원	
7	위 원	주 무 관	정 O 규	
8	위 원	개발위원장	함 O 식	
9	위 원	마을이장	김 O 팔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시행공문 및 심의의견(운전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운전천 등 5개하천 하천 하천기본계획]

□ 총괄 의견

- 동 계획은 지방하천인 운전천, 대야천, 금마천, 대두천, 둔기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임
- 하천의 이·치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현재의 자연하천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의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하천정비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 범위,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해당하천에 대하여 과거 수립한 하천기본계획 현황 제시
 - 도면에 기수립구간 연장 및 수립시기, 계획빈도 등 제시
 -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 수해 및 재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금회 계획의 적정성 및 필요성 제시

2. 대안 및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기본계획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하천유역 현황, 토지이용현황, 홍수 등 재해현황, 상위·관련계획 등을 반영하여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안에 대해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치수안전도, 지구지정, 친환경적 계획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방법 대안(구조적, 비구조적, 구조적+비구조적) 설정
- 하천구간별 지구 지정 시 필요성 및 수요, 하천 및 하천 내 시설물

현황, 구간별 하천공간 활용 목표 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관리계획상 지구[보전(특별, 일반, 완충), 복원, 친수(거점, 근린)지구] 지정의 대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근거(도면 등 포함)를 제시하여야 함

- 하천 지구지정 현황과 금회 계획을 비교하고, 보전 또는 복원지구를 친수지구로 변경하는 구간은 구체적인 사유 제시

○ 하상훼손 및 시설물 계획은 최소화하고, 하천의 상·하류 및 주변 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안 선정 시 재해의 위험성 및 취약성과 생태계훼손 가능성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점 검토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범위는 계획수립·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권을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범위 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천 수질·저질은 상·하류 최소 2개지점 이상에서 조사

※ 저질 조사는 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기준상 모든 항목에 대해 실시

○ 하천 주변에 서식하는 동·식물상의 현지·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 수립 시 대안을 설정하고 환경영향 등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생태현황 조사는 가급적 각 분류군별 적정한 시기(활동이 왕성한 시기 등)에 실시하고, 법정보호종 분포현황 및 주요 서식처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

※ 동·식물상 조사는 각 분류군별로 정량·정성적으로 충분히 실시(현지조사표 첨부)하여 그 결과를 상세히 수록하고, 조사지점·구역·경로 등을 지형도에 표기

○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수질오염원 현황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관련 행정계획과 연계하여 하천 내 저감시설 설치계획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하천의 수량·수위(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등) 산정 시 유역특성에 적합한 최근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계획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해당하천 말단부에 배수갑문의 설치 유무를 제시하고 해당하천의 조위 영향 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 **대야천**이 조위의 영향을 받는 감조하천일 경우 감조구간은 홍수위 산정 시 일반하천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도계수는 하도형상 및 하상 여건, 조사자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부정류 모의방법 적용 검토
- 구간별 하천생태 현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1/5,000 ~ 1/25,000 지형도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환경정보를 제시하고 계획구간이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현황을 상세하게 제시
 - **금마천, 둔기천**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과 인접한 구간에 공사계획이 있을 경우 도면에 확대하여 제시
- 현재 경관과 사업 시행 전·후 경관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망점(원경, 중경, 근경)별로 경관 시뮬레이션 실시하고, 그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제19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대상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지·홍보
 - ※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그림·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활용

5. 기 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을 제시하고 동 계획수립권자가 하천관리청이 아닐 경우 위임 규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해당 하천의 개별 하천점용 허가 시 사업시행자 및 허가권자를 제시하여야 함

2021. 1. 25.

심의위원 이수진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운전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 김 유 미 (인)

□ 총괄 의견

- 본 건은 전라남도 해남군 일원에 위치한 지방하천 운전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임
- 계획수립 시 치수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하천이 갖는 자연성 및 환경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계획하천 구간별 계획내용을 표와 도면 등을 이용하여 상세히 수록하여야 하며, 구간별 개수 및 시설물 계획에 대해 필요성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불필요한 횡적구조물(보·낙차공)에 대해서는 하천 건강성 및 수생태계 연속성을 복원할 수 있도록 철거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조사결과 및 환경현황을 구간별로 비교·평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홍수방어 대책의 수단·방법, 시설물의 입지 및 규모 등 세부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더불어 관련계획(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과의 시설물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를 구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심 의 의 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적정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계획비교를 위한 대안 평가 시, 계획의 장·단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닌 계획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될 수 있도록 효과 및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계획의 유형별(치수, 이수, 환경, 공간관리 계획)로 각각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또한 수단방법 대안의 경우 개수계획과 관련된 단순 공법(축제 및 보축

또는 하상굴착)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설계기준의 수준별로 효과를 비교 검토하여야 함

- 설계빈도 설정 시 뚜렷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분석을 통해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횡적시설물 및 호안설정 등 수단·방법에 관한 대안평가의 경우에도 하천 현황을 고려하여 하천별 혹은 구간별 평가를 시행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에 대해 명확한 공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별 계획에 대해 환경, 생태계,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이치수 효과(장점) 및 항목별 환경영향(단점)을 구체적으로 평가 제시하여 최적의 계획을 도출하여야 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 기상 및 대기질의 경우 본 사업이 추후 실시설계단계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대상일 경우 본 전략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평가항목 제외 가능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동·식물상): 하천구간 중 합류부, 식생이 우수한 구간에 대한 하천 현황 제시, 보 및 낙차공의 생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능 분석 후 철거 및 존치 여부 등의 계획 제시

- 수환경의 보전(수질): 수질현황 및 연관된 수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천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보전 및 관리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또한 사업으로 인한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수환경의 보전(수리수문): 하천설계빈도 상향조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수립 대비 홍수량 변동사항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함. 개수현황, 홍수이력,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의 현황조사와 관련계획을 토대로 치수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이때 설계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하도 전구간의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설물 위주의 계획은 지양하여야 함. 제방, 횡적구조물 등 기존 시설물 현황과 정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 시 설계기준에 맞는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현황은 해당 하천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지역 및 침수피해지역 등을 포함하여 하천 연안의 토지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간관리계획에 따른 계획하천 구간별 지구설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환경기준의 부합성(토양): 하천·호소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수자원 이용 및 홍수, 하천구역 편입 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5. 기 타 의견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운전·대야전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 정 종 원 (인)

□ 총괄 의견

-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환경목표와 부합성 및 연계성을 검토하여 반영시켜야 함.
- 자연하천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심 의 의 건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운전·대야전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선정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하천 구간별 생태적인 특성을 조사하여 자연훼손이 적은 방안을 선택하고 수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부적정
- 환경현황 조사는 조사지점, 횡수 명확하게 제시 필요
-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 적정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본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필요

5. 기 타 의 건

- 하천의 자연생태의 보전과 생태적 복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운전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 강경진(인)

총괄 의견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자연형 하천이 형성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의견 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생태계 및 수질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 대체로 적정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마을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토록 하기 바랍니다.

5. 기 타 의견

- 의견 없음

붙임 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 오 해 준 (인)

□ 총괄 의견

- 친환경적인 자재 사용 및 기존 보 및 제방의 건설폐기물 등 적극적인 처리안 마련
- 계절에 따른 수생태계 생물 서식 환경 및 서식지 반영 필요

□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적합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유속과 유량에 따른 생태계연속성 등 반영 필요

3.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부적정)
 - 부적정시 의견 : 주변 환경 안정성 포함하여 수립
: 비산먼지, 소음진동, 건설폐기물 등 발생으로 인한 피해 저감 대책 수립
-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 (부적정)
 - 부적정시 의견 : 계절 및 강수에 따른 공사 계획 및 일정 조절 필요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적합함

5. 기 타 의견

- 의견 없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운전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 김 용 구



□ 총괄 의견

- 운전전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검토한 결과 평가항목 및 범위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선정됨.
-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에 부합하게 대상지역 설정해야 하며, 사업지구의 경우 농경지, 도심지구 및 해안지대로 지역 특성에 적절한 대응 방안 강구할 것.

□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은 충분한 범위를 설정하여 환경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

2. 대안

- 사업으로 인한 토지 지형 변화 등 환경성(생태적) 측면에서 고려하여 각 대안별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 후 환경친화적이고 기후위기에 대응 가능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인공 시설물 설치계획 최소화, 기후변화를 고려한 적정 하천폭의 설정등)
- 대안별 비교,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비교 검토

3.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적정
-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 적정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의견수렴은 주민설명회(대면)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바람직하지만, COVID-19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의견수렴을 적극 검토하되, 지역 주민 및 해당 지자체의 의견 충분히 수렴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기타 의견

- 하천의 차·이수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공간에 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간적 측면에서 생태적 연결성(하천->농경지->산림생태축)을 고려하여 시설물 및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수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운전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 김 대 

□ 총괄의견

- 대상지역 선정, 대안 선정, 평가항목 선정, 평가항목 범위 및 방법의 선정이 대체로 적정함
- 본 계획은 하천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아래의 검토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심의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선정

- 대상지역 선정이 대체로 적정함. 운전천의 유역 및 환경특성에 따라 환경영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할 것임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하천시설물 능력검토 결과에 따라 하천시설물 설치계획 수립시 치수, 이수,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한 대안을 선정해야 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적정
-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 적정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5. 기타 의견

- 하천의 상류와 하류를 단절시키는 낙차공/보와 같은 시설물 계획은 최소화(기존 시설물이라도 그 설치목적이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과감히 철거하는 것이 필요함)할 수 있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시행공문 및 심의의견(대야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운전천 등 5개하천 하천 하천기본계획]

□ 총괄 의견

- 동 계획은 지방하천인 운전천, 대야천, 금마천, 대두천, 둔기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임
- 하천의 이. 치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현재의 자연하천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의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하천정비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 범위,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해당하천에 대하여 과거 수립한 하천기본계획 현황 제시
 - 도면에 기수립구간 연장 및 수립시기, 계획빈도 등 제시
 -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 수해 및 재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급회 계획의 적정성 및 필요성 제시

2. 대안 및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기본계획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하천유역 현황, 토지이용현황, 홍수 등 재해현황, 상위·관련계획 등을 반영하여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안에 대해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치수안전도, 지구지정, 친환경적 계획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방법 대안(구조적, 비구조적, 구조적+비구조적) 설정
- 하천구간별 지구 지정 시 필요성 및 수요, 하천 및 하천 내 시설물

현황, 구간별 하천공간 활용 목표 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관리계획상 지구[보전(특별, 일반, 완충), 복원, 친수(거점, 근린)지구] 지정의 대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근거(도면 등 포함)를 제시하여야 함

- 하천 지구지정 현황과 금회 계획을 비교하고, 보전 또는 복원지구를 친수지구로 변경하는 구간은 구체적인 사유 제시

○ 하상훼손 및 시설물 계획은 최소화하고, 하천의 상·하류 및 주변 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안 선정 시 재해의 위험성 및 취약성과 생태계훼손 가능성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점 검토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범위는 계획수립·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권을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범위 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천 수질·저질은 상·하류 최소 2개지점 이상에서 조사

※ 저질 조사는 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기준상 모든 항목에 대해 실시

○ 하천 주변에 서식하는 동·식물상의 현지·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 수립 시 대안을 설정하고 환경영향 등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생태현황 조사는 가급적 각 분류군별 적정한 시기(활동이 왕성한 시기 등)에 실시하고, 법정보호종 분포현황 및 주요 서식처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

※ 동·식물상 조사는 각 분류군별로 정량·정성적으로 충분히 실시(현지조사표 첨부)하여 그 결과를 상세히 수록하고, 조사지점·구역·경로 등을 지형도에 표기

○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수질오염원 현황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관련 행정계획과 연계하여 하천 내 저감시설 설치계획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하천의 수량·수위(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등) 산정 시 유역특성에 적합한 최근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계획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해당하천 말단부에 배수갑문의 설치 유무를 제시하고 해당하천의 조위 영향 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 **대야천**이 조위의 영향을 받는 감조하천일 경우 감조구간은 홍수위 산정 시 일반하천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도계수는 하도형상 및 하상 여건, 조사자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부정류 모의방법 적용 검토
- 구간별 하천생태 현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1/5,000 ~ 1/25,000 지형도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환경정보를 제시하고 계획구간이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현황을 상세하게 제시
 - **금마천, 둔기천**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과 인접한 구간에 공사계획이 있을 경우 도면에 확대하여 제시
- 현재 경관과 사업 시행 전·후 경관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망점(원경, 중경, 근경)별로 관 시물레이션 실시하고, 그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제19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대상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지·홍보
 - ※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그림·시물레이션 자료 등을 활용

5. 기 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을 제시하고 동 계획수립권자가 하천관리청이 아닐 경우 위임 규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해당 하천의 개별 하천점용 허가 시 사업시행자 및 허가권자를 제시하여야 함

2021. 1. 25.

심의위원 이수진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대야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 김 유 미 (원)

□ 총괄 의견

- 본 건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일원에 위치한 지방하천 대야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임
- 계획수립 시 치수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하천이 갖는 자연성 및 환경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계획하천 구간별 계획내용을 표와 도면 등을 이용하여 상세히 수록하여야 하며, 구간별 개수 및 시설물 계획에 대해 필요성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불필요한 횡적구조물(보·낙차공)에 대해서는 하천 건강성 및 수생태계 연속성을 복원할 수 있도록 철거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조사결과 및 환경현황을 구간별로 비교·평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홍수방어 대책의 수단·방법, 시설물의 입지 및 규모 등 세부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더불어 관련계획(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과의 시설물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를 구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심 의 의 건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적정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계획비교를 위한 대안 평가 시, 계획의 장·단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닌 계획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될 수 있도록 효과 및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계획의 유형별(치수, 이수, 환경, 공간관리 계획)로 각각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또한 수단방법 대안의 경우 개수계획과 관련된 단순 공법(축제 및 보축 또는 하상굴착)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설계기준의 수준별로 효과를 비교 검토하여야 함
 - 설계빈도 설정 시 뚜렷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분석을 통해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횡적시설물 및 호안설정 등 수단·방법에 관한 대안평가의 경우에도 하천 현황을 고려하여 하천별 혹은 구간별 평가를 시행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에 대해 명확한 공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별 계획에 대해 환경, 생태계,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이치수 효과(장점) 및 항목별 환경영향(단점)을 구체적으로 평가 제시하여 최적의 계획을 도출하여야 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 기상 및 대기질의 경우 본 사업이 추후 실시설계단계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대상일 경우 본 전략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평가항목 제외 가능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동·식물상): 하천구간 중 합류부, 식생이 우수한 구간에 대한 하천 현황 제시, 보 및 낙차공의 생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능 분석 후 철거 및 존치 여부 등의 계획 제시
 - 수환경의 보전(수질): 수질현황 및 연관된 수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천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보전 및 관리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또한 사업으로 인한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수환경의 보전(수리수문): 하천설계빈도 상향조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수립 대비 홍수량 변동사항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함. 개수현황, 홍수이력,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의 현황조사와 관련계획을 토대로 치수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이때 설계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하도 전구간의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설물 위주의 계획은 지양하여야 함. 제방, 횡적구조물 등 기존 시설물 현황과 정비계획을 명확

히 제시하고 사업시행 시 설계기준에 맞는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현황은 해당 하천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지역 및 침수피해지역 등을 포함하여 하천 연안의 토지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간관리계획에 따른 계획하천 구간별 지구설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환경기준의 부합성(토양): 하천·호소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수자원 이용 및 홍수, 하천구역 편입 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5. 기 타 의견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운전·대아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 정 종 원 (인)

□ 총괄 의견

-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환경목표와 부합성 및 연계성을 검토하여 반영시켜야 함.
- 자연하천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심 의 의 건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운전·대아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선정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하천 구간별 생태적인 특성을 조사하여 자연훼손이 적은 방안을 선택하고 수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부적정
- 환경현황 조사는 조사지점, 횡수 명확하게 제시 필요
-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 적정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본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필요

5. 기 타 의 건

- 하천의 자연생태의 보전과 생태적 복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대야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 김 대 

□ 총괄의견

- 대상지역 설정, 대안 설정, 평가항목 선정, 평가항목 범위 및 방법의 설정이 대체로 적정함
- 본 계획은 하천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아래의 검토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심의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대상지역 설정이 대체로 적정함. 대야천의 유역 및 환경특성에 따라 환경영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하천시설물 능력검토 결과에 따라 하천시설물 설치계획 수립시 치수, 이수,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한 대안을 선정해야 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적정
-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 적정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5. 기타 의견

- 하천의 상류와 하류를 단절시키는 낙차공/보와 같은 시설물 계획은 최소화(기존 시설물이라도 그 설치목적이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과감히 철거하는 것이 필요함)할 수 있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음.
- 교량 직상류에 낙차공 2개소 신설계획하고 있음. 이는 낙차공 직하류에 위치하는 교량기초에 불리하며, 하천단절 및 하도의 침식과 퇴적 양상에 교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또한 신설되는 취입보 2개소에 대해서도 그 설치 목적 및 편익분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붙임 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 김도희

□ 총괄 의견

- 하천거부 계획에 있어 수리, 수문, 수질관리가 중요하다.
- 홍수대비 등 위해 취약지역 파악, 유량 및 오염부하량 평가 요구됨.

□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수질 및 육상생태 오염부하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범위 경계 설정
-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한 하천유지수 관리가 요구되며, 수위변동 구역에 해당하므로 수질관리가 요구됨.

3.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 부적정시 의견 :

계절별, 시기, 지점별 유량변동, 수질변동 파악이 미흡함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 부적정시 의견 : 오염부하량 예측에서 가중치 부여 예측이 미흡함. 지하수 및 광물개발에 의한 수질검토가 요구됨.

-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 부적정시 의견 : 일차적 강수량 예측, 취약지역 예측을 통해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의 고려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인지하여 의견수렴이 요구됨.

5. 기타 의견

- 하천의 자정능력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하천관리가 요구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대야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김영관** (원)

중괄의견

-
-

심의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등 3가지 대안 선정은 적정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 부적정시 의견 :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 부적정시 의견 :

-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 부적정시 의견 :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및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5. 기 타 의견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대야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 정문규 (인)

□ 총괄 의견

- 대야천 인근 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적정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여러 대안을 검토하여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설정하여 개수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적정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하천 주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바람.

5. 기 타 의견

- 의견 없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대야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  (인)

총괄 의견

-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천 본연의 생태환경과 아름다운 자연하천이 되도록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의견 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폭우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3.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 중점검토항목은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민원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바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준비서에 제시한 내용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람.

5. 기 타 의견

- 의견 없음